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32 발의연월일: 2025. 5. 29.

발 의 자: 박수민·이헌승·김소희

김은혜 • 박충권 • 박준태

최은석 • 박성훈 • 강대식

조승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않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사무에대한 지휘·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휘·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조차 없어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사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지원되는 공공사업임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사전·사후 검증 및 회계감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회계감사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형평성 및 예산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제117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위탁사무의 지휘·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17조의2(위탁사무의 지휘・감 |
| | 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 |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
| | 사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
| | <u>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감독</u> |
| |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
| | 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 |
| | 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
| | <u>수 있다.</u>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
| | 에 따른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 |
| | 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외부 |
| | <u>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u> |
| |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
| | 호의 감사인을 말한다)의 회계 |
| | 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
| |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절차 |
| |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
| | 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 |